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72
----------	-------

발의연월일 : 2026. 1. 6.

발 의 자 : 강경숙·김재원·김선민
서왕진·신장식·박은정
정춘생·황운하·임호선
김준혁·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문화학생등의 성명, 성별, 국적, 거주지 등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여 다문화학생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문화학생등의 학적 및 학교 초기 적응 지원에 필요한 다문화학생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은 제8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다문화학생등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과 관련된 초기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연락처 및 주요 지원 내용

2.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적응 및 교육 기회 보장에 관련된 내용

⑩ 제8항에 따른 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⑤ (생 략)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문화학생등의 성명, 성별, 국적, 거주지 등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여 다문화학생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u>⑦ 제6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문화학생등의 학적 및 학교 초기 적응 지원에 필요한 다문화학생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u>

<신 설>

⑨ 교육감은 제8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다문화학생등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과 관련된 초기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연락처 및 주요 지원 내용

2.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적응 및 교육 기회 보장에 관련된 내용

<신 설>

⑩ 제8항에 따른 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